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359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21. 12. 24. 접수 제64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한도금액 또는 신용보증원금	한도거래기간 또는 신용보증기간
1	2016. 5. 31.	1,300,000,000원	2016. 5. 31.부터 2018. 5. 30.까지
2	2020. 5. 20.	425,000,000원	2020. 5. 20.부터 2021. 5. 18.까지
3	2020. 5. 20.	114,750,000원	2020. 5. 20.부터 2021. 5. 18.까지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B은 원고와 사이에, C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장래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2022. 3.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C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2022. 7. 19. 중소기업은행에게 C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1,246,874,541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C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에 의한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등 합계 1,253,549,644원 및 그 중 위 대출원리금 1,246,874,54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위 법원 2022차전11656호)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22. 7. 25. 원고의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2. 8.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B은 2021. 12. 22.

자신의 처형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646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1,246,874,541원 외에도 D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대출금 채무 75,681,000원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439,000,000원 등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C를 대위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2. 7. 19. C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B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였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무자력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피고는 B의 처형으로서 B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점,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